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297호

나. 발 의 자 : 김지향 의원 외 28명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9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K콘텐츠의 전세계적인 흥행으로 서울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서울시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- 특히, 최근 기존의 알려진 관광 명소보다 현지의 생활과 일상 공간에 대한 체험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SNS의 발달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식문화 등으로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,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시 「식품위생법」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서울시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시 「식품위생법」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소상공인 포함(제8조제6호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식품위생법」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및 폐업을 지원하여 관련 사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적 인식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됨.

나.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및 폐업 지원(제8조제6호)

- 안 제8조제6호는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소상공인에 「식품위생법」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소상공인을

포함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</p> <p>7. ~ 8. (생략)</p>	<p>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(<u>「식품위생법」 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소상공인 포함</u>)</p> <p>7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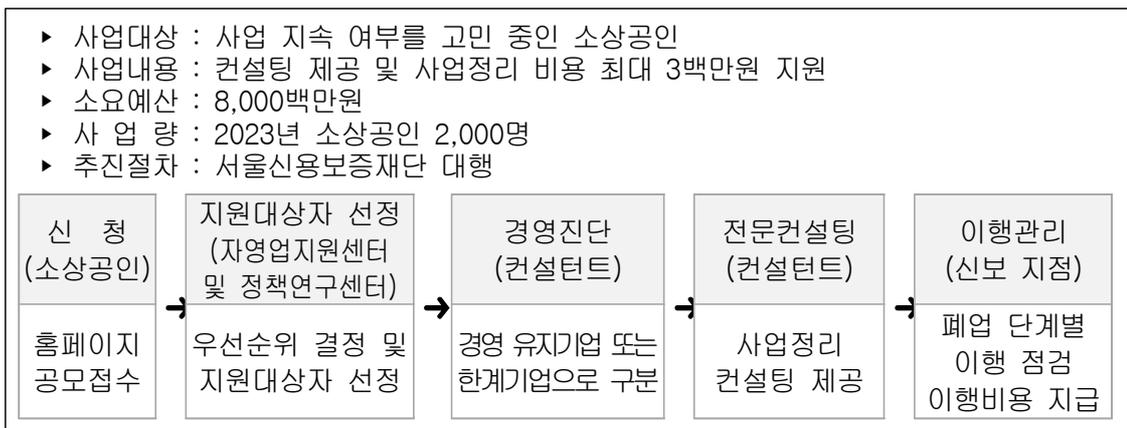
- 이와 관련하여 정부(식품의약품안전처)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¹⁾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성분을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을 통해 고시하여 식품원료로써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의 가공·유통·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.
-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, 고양이, 말벌, 불개미 등 「식품위생법」 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이 민간요법, 보신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비되고 있는 상태임.

1)식품위생법 제7조(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.

1. 제조·가공·사용·조리·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
2. 성분에 관한 규격
- ② ~ ③ 생략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·수입·가공·사용·조리·보존하여야 하며,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·가공·사용·조리·저장·소분·운반·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특히 이러한 식품은 사육·유통 과정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이 부재하여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하거나, ‘혐오식품’으로 언론 및 SNS 등에 노출되어 국제사회에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.
- 또한 서울시는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‘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’ 사업을 기추진 중이므로, 동 조례 개정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<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>

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, 서울시의 국제적 인식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